

우리나라 헌법상의 정보보호문제 고찰

진승현*, 정교일*, 이대기**, 유형준**, 김영국**

요약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가 점차로 심화되면서, 기존의 법 이론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새로운 법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 등 정보사회의 특징은 아날로그, 유체물,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법 원리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보 흥수 속에서 의사소통과 법 해석의 문제, 기본 권리, 무체물의 재산성, 액세스에서의 권리성 등 정보사회에 대한 법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현행 우리 헌법에서 정보보호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을 우리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I. 서 론

헌법(憲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질서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이다. 따라서 헌법상 정보보호문제도 구체적 보호 규정을 두거나 침해행위에 대한 형벌이나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권원(權源)의 확인을 통한 보호의 문제이다. 정보가 사용자나 사용조직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보원(情報源)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형태로 처리한 것으로 정의하여 볼 때 국민의 기본권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정보보호의 문제는 그 개념적 정의나 한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크게 프라이버시 보호, 알 권리 보장, 정보사용권 및 정보참가권의 보장문제로 요약할 수 있겠다.

지식정보사회는 고도의 정보 수집·처리·유통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보의 확산을 통한 기본권 실현에 기여 하지만 반면에 정보의 왜곡과 독점을 초래하여 정보의 평등한 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비밀영역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자신의 의도대로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와 정보침해로부터의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영역보호의 헌법적 보장 문제가 요청된다 하겠다.

II. 헌법의 개요

1. 헌법의 개념

헌법은 한 국가의 권력관계와 같은 정치적 사실을 뜻하기도 하고,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뜻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가진다. 헌법을 국가의 정치적 통일 및 사회질서의 구체적 상태로서 파악하는 것을 사회학적 개념이라고 하며, 헌법을 현실을 규제하고 정치생활과 국민생활의 참다운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법규범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법학적 개념이라고 한다.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으로서 실질적 평등과 재산권의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질적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정의의 실현, 권력행사의 통제와 조정,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행정 국가적 경향, 국제평화주의 등을 기본원리로 한다.

2. 헌법의 특성

헌법은 일반 법률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다. 헌법의 특성은 제도적 특성과 규범적 특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헌법의 제도적 특성은 정치성·이념성·역사성 등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 ({jinsh, kyoil}@etri.re.kr)

** 프롬투정보통신(주) ({dklee, youhj, youngkook}@from2.co.kr)

들 수 있다. 헌법은 대립된 정치세력 사이의 투쟁과 탐욕의 산물인 점에서 정치성을 가진다. 헌법은 정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변화하는 정치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유동적·추상적·개방적으로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헌법은 일정한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념성을 가지며, 그 이념은 일정한 역사적 조건과 상황속에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역사성을 가진다. 헌법에 내재하며 지향되는 이념과 가치는 헌법정신의 핵심을 이루며, 그때 그때의 역사적 발전 단계에 상응한다.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이 사회국가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헌법의 규범적 특성으로는 최고규범성과 수권조직규범성, 권력제한규범성, 생활규범성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은 한 국가의 실정법 체계속에서 최고의 단계에 위치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최고 규범성을 가진다. 헌법의 최고규범성은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정립되었다는 데에 근거 하며, 헌법 이외의 법률·명령·규칙 등의 타당성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헌법은 국가의 조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수권적 조직 규범성을 가진다. 헌법에 의하여 조직된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은 통치조직에 대한 규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권력제한 규범성을 가진다. 헌법에 의한 국가기관의 권력제

한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권력분립과 국가기관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의 생활속에서 실현되고 발전한다는 점에서 생활규범성을 가진다. 헌법은 국민의 모든 생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규범 내지 행동규범의 성격을 띠며, 따라서 헌법은 국민의 시대사상과 생활감각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생활이 헌법에 맞도록 실현한다.

3. 헌법의 구성 등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개정·공포되었으며, 전문(前文)을 비롯하여 제1장 총장,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2관 국무회의·제3관 행정각부·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으로 총10장 2절 4관(款) 130조 6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이래 그 동안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국민의 기본권은 제3차, 제5차, 제8차 및 제9차 헌법 개정에서 크게 강화되고 체계화 되었다.

헌법의 개정연혁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헌법의 개정연혁 현황

구분	공포일(제안자)	주요개정내용	비고
1차 개헌	1952. 7. 7. (제2대 국회)	○양원제(민의원, 중의원) ○대통령, 부통령의 직선제 채택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도 채택 등	
2차 개헌	1954. 11. 29. (제3대 국회)	○주권의 제약영토의 변경 등 중대사항에 관한 국민 투표제 채택 ○초대 대통령의 경우 연임금지조항 적용배제 및 국무총리제 폐지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도를 국무위원 개별적 불신임제도로 전환 ○군법회의에 대한 헌법적 근거 마련 ○경제에 관한 국가의 조정·통제 완화	
3차 개헌	1960. 6. 15. (제4대 국회)	○국민의 기본권 일부 강화(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 금지 등) ○정당보호규정 신설 ○내각책임제 채택 ○중앙선거위원회의 설치 ○헌법재판소의 신설 및 중앙선거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제 채택 ○경찰의 중립보장 ○시·읍·면장의 주민직선제 채택 등	○제2공화국 성립
4차 개헌	1960. 11. 29. (제5대 국회)	○4. 19선거에 관련된 부정선거 관련자 및 반민주 행위자의 공민권제한과 부정축재자의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의 근거 마련 ○상기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및 특별검찰부의 설치 등	
5차 개헌	1962. 11. 26. (국가재건최고 회의)	○자유권·생존권·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조항을 체계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임후보에 있어서의 정당추천제 채택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위헌법률심사권 등을 법원에 부여함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채택 등)	○전문개정 ○제3공화국 성립

6차 개헌	1969. 10. 21. (제7대 국회)	○국회의원의 수를(150인~200인)에서 (150인~250인)으로 함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 강화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2기에서 3기로 연장함	○3선 개헌
7차 개헌	1972. 7. 27. (비상국무회의)	○조국의 평화통일 지향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의 권한 강화 ○국회권한의 합리화 ○정당국가적 성격의 지향 ○헌법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절차 이원화 등	○유신(維新) 헌법
8차 개헌	1980. 10. 27. (대통령 제안)	○총강에 국가의 정당 보조금 지급, 국군의 사명조항을 신설 ○기본권 조항에 연좌제금지, 사생활 비밀, 환경권, 적정 임금조항 추가 ○대통령은 7년 단임제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였으며 국정조사권 및 비례 대표의 균거조항을 신설	○전문개정 ○제5공화국 성립
9차 개헌	1987. 10. 29. (제12대 국회)	○기본권 보장 강화 ○대통령 임기 5년 단임, 국민 직접 선거 ○국회 예산권 삭제 ○비상조치권, 긴급명령권으로 변경 ○국정감사권 부활 ○헌법재판소 설치	○전문개정 ○현행헌법

현재 우리나라 법령의 총 전수는 헌법 1건, 법률 1,094건, 대통령령 1,406건, 총리령 67건 및 부령 1,235건으로 총 3,803건(2004. 4. 30. 현재 법제처 통계자료)이다.

III. 헌법상의 정보보호

1. 헌법상의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신보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 재산보호, 참정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서 헌법상 정보의 수집·처리·유통 등 정보의 이용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관련 기본권을 살펴보면, 정보의 수집·처리·유통은 각각 서로 다른 기본권 영역에서 보장되고 있다. 먼저 정보의 수집은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로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나 일반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등의 문제로서 알 권리로서 보호되고 있다. 정보의 처리는 정보를 만들거나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행위로 언론기관에 있어서는 편집권, 편성권 등의 보호문제이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처리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사상·양심·학문의 자유로써 보호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유통이라 함은 개인이나 언론기관 등이 처리한 정보를 특정인이나 일반공중에 알리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보호로써 보호받을 수 있고, 일반공중에 전달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기관의 독점화 등에 대응하여 일반인이 그 의견이나 정보를 언론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액세스권이나 반론권

등도 행사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정보의 침해로부터의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영역보호의 헌법적 보장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정보의 침해로 말미암아 손실되는 기본권의 영역을 통한 구제의 문제이다.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보의 프라이버시적인 가치나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 양 가치가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정보의 침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보호나 재산권의 보호영역에서 보호받게 된다.

1.1 자기정보관리청구권

자기정보관리청구권이란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자율적 결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이 개념을 광의로 본다면, 자신에 관한 정보를 합부로 침해 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유로이 열람하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정·사용중지·봉쇄·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아니할 경우에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지배권을 말한다.

이에 대해 협의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란 자기정보의 열람·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데, 일반적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이라 했을 때는 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와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좁게 해석하여 사생활의 비밀보호에는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 포함되지 않고 제10조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에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로 나뉘어지고 있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 자기정보열람청구권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유기관에 대해 그 기관이 보유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정보보유기관이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이유와 이의신청의 절차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정보주체는 일반의 소송절차나 독립된 감찰기관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가 문서 이외의 필름, 자기테이프 등에 수록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본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1.2 자기정보정정·보완청구권

정보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한 결과 정보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이면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보유기관은 그 요구에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정정·보완하여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거부이유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정확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입증의 곤란성을 고려할 때 정보보유기관에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1.1.3 자기정보사용중지·삭제청구권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정보보유기관이 법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법규의 취지에 반하여 부적정한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은 당해 정보의 사용중지 또는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정보보유기관은 당해 청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사용중지·삭제의 유무 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2 통신의 비밀보호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 불가침을 의미하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그의 의사나 정보를 통신·전화·전신 등의 수단에 의하여 전달 또는 교환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여기에서 통신이라 함은 협의로는 격지자(隔地者)간의 의사전달

을 말하며, 광의로는 의사전달 이외에 물품의 수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통신의 비밀보호는 단순히 편지나 우편물의 전달과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그 본질적 의의가 있기에 헌법 제18조에서 보장되는 통신이란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의사전달 수단으로 편지 기타 우편물 외에도 전화, 전신, 팩스 등 통신망을 통한 의사의 전달도 포함되며 전파를 통한 의사전달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신의 비밀보호란 통신의 내용뿐 아니라 그 통신의 형태, 당사자, 전달방법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므로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볼 때 정보유통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침해 받지 아니한다는 주요내용은 열람금지, 누설금지, 정보금지라 할 수 있다. 열람금지란 통신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통신물을 열거나 또는 읽거나 도청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고, 누설금지란 통신업무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고, 정보금지란 통신업무내용을 정보활동의 목적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내용을 보호해주는 사생활보호의 수단적 의의를 가지며, 통신수단을 통해 사생활의 영역이 확대됨을 가정할 때 사생활의 영역을 넓혀주는 기능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통신이라는 정보의 이동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이러한 정보유통의 자유는 재산권보호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3 알 권리(정보의 자유)

알 권리(정보의 자유)라 함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언론기관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취재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알 권리는 정보관리통제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은 별개의 권리가 아니라 정보의 자유는 정보생활이 실제에서 정보획득의 문제로서 개인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정보생활의 실제에서 자신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경우 수정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다. 정보의 자유 즉, 알 권리의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구하거나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구하는 견해와 알 권리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복합적인 권리로 이해하여 국민주권의 원리(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 여러 헌법조문에서 찾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알 권리는 정보를 획득하여 현실생활의 기초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이 때의 현실생활이란 일상적인 대화(존엄성이나 행복추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 의사표현의 전제로서의 의사형성(표현의 자유 관련),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에서 여론형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알 권리를 규정하는 개별조항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의 헌법적 근거를 관련 헌법조문들을 근거로 해석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알 권리의 법적 성격을 보면 자유권으로서의 성격과 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보는 견해와 알 권리를 좁게 해석하여 청구권으로의 성격만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알 권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때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 받지 아니하는 자유권적인 성격을 띠며, 또한 알 권리가 공공기관에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의미할 경우에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님을 감안할 때 자유권적 성격과 청구권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4 액세스권

언론의 독점화와 집중화로 인해 언론기관이 자의적으로 이의 이용과 접근을 거부할 경우, 일반국민은 사상과 의견을 발표하고 전달하여 언론기관에의 자유로운 접근·이용을 헌법상 보장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액세스(Access)권이라 한다. 액세스권의 주된 내용은 매스미디어(Mass media)에 접근해서 매스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도매체 접근 이용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본 정보의 수집·처리·유통이라는 정보생활의 제단계에서 정보의 전달, 특히 개인의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수대중에게 전달을 보장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또한, 액세스권과 관련하여 반론권도 문제되고 있는 데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학자에 따라서는 액세스권속에 반론권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반론권의 내용이 언론기관과 분리하

여 보기도 하나, 반론권의 내용이 언론기관의 잘못된 보도에 피해를 입은 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역시 언론기관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하기보다는 오히려 액세스권의 한 내용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현재 이러한 액세스권의 헌법상 근거를 논함에 있어, 헌법 제21조제4항의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서 찾는 견해, 언론출판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에서 찾는 견해, 액세스권과 반론권을 구분하고 액세스권은 헌법 제21조제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지닌다”는 규정과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제34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는 규정 등 여러 기본권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으며, 반론권은 헌법 제21조제4항에서 구하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 있는 데 그 실질적 의의를 고려할 때 마지막 설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고전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는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소극적 권리라 할 수 있으나 액세스권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라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액세스권은 지식정보시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대중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지식정보시대에서 언론 기타 대중매체의 영향력이나 정보력은 일반대중 개인을 훨씬 능가하기에 이의 보장이 없다면 국민은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유통시키는 데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될 것이며, 이에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액세스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2. 헌법상의 정보보호관련 부속법령

정보의 침해는 정보의 주체인 사용자나 사용조직의 인격권은 물론 국가의 안전 내지 사회 공공의 이익도 침해한다. 이로써 정보에 대한 국가적인 보호는 법제 차원의 정보보호 법제 차원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차원의 보호에 기초하여 국가안전보장 내지 사회질서 등의 유지라는 헌법원리에 기초한다. 따라서, 헌법원리에 입각한 통일성 있는 정보보호 법제가 일관성 있는 것이 되어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가져 온다. 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의 체계적 분류와 산재한 정보보호 법제를 일관된 법 원

리와 법 질서 및 해석원리에 의하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보호를 법률상의 개별 조항으로 독립하여 규정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다. 정보보호관련 법률중 헌법부속법령 예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헌법제17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대한법률(헌법제21조제1항), 방송법(헌법제17조 및 제21조), 통신비밀보호법(헌법제18조 및 제37조제2항), 특허법(헌법제22조)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주요 정보보호관련 법률 현황을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국내 주요정보보호관련 법률 현황

법률명	제정일	최근개정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994. 1. 7. (법률 제4734호)	1999. 1. 29. (법률 제5715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법률	1996. 12. 31. (법률 제 5242호)	2004. 1. 29. (법률 제7127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1997. 12. 31. (법률 제 5493호)	2004. 1. 29. (법률 제 7115호)
대외무역법	1986. 12. 31. (법률 제3895호)	2003. 9. 29. (법률 제6977호)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1991. 12. 31. (법률 제4479호)	1999. 2. 5. (법률 제5769호)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1992. 12. 8. (법률 제4526호)	2002. 1. 26. (법률 제6626호)
방송법	1987. 11. 28. (법률 제3978호)	2004. 3. 29. (법률 제 7213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961. 12. 30. (법률 제911호)	2004. 1. 20. (법률 제7095호)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1994. 12. 22. (법률 제4824호)	2001. 12. 31. (법률 제6590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987. 12. 4. (법률 제3984호)	2003. 7. 25. (법률 제6937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1995. 1. 5. (법률 제4866호)	2004. 1. 29. (법률 제7110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002. 1. 14. (법률 제6603호)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001. 5. 24. (법률 제6473호)	2004. 1. 29. (법률 제7131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2004. 1. 29. (법률 제7142호)	-
저작권법	1957. 1. 28. (법률 제432호)	2003. 5. 27. (법률 제6881호)
전기통신기본법	1983. 12. 30. (법률 제3685호)	2002. 12. 26. (법률 제6823호)
전기통신사업법	1983. 12. 30. (법률 제3686호)	2004. 2. 9. (법률 제7165호)
전자거래기본법	1999. 2. 8. (법률 제5834호)	2002. 1. 19. (법률 제6614호)
전자서명법	1999. 2. 5. (법률 제5792호)	2001. 12. 31. (법률 제6585호)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2001. 3. 28. (법률 제6439호))	2003. 5. 15. (법률 제6871호)
전파법	1961. 12. 30. (법률 제924호)	2003. 5. 29. (법률 제6909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2001. 1. 26. (법률 제6383호)	2002. 12. 18. (법률 제6796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986. 5. 12. (법률 제3848호)	2004. 1. 29. (법률 제7139호)
정보화촉진기본법	1995. 8. 4. (법률 제4969호)	2002. 12. 18. (법률 제6795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86. 12. 31. (법률 제3920호)	2002. 12. 30. (법률 제6843호)
통신비밀보호법	1993. 12. 27. (법률 제4650호)	2004. 1. 29. (법률 제7138호)
특허법	1961. 12. 31. (법률 제950호)	2002. 12. 11. (법률 제6768호)
형법	1953. 9. 18. (법률 제293호)	2004. 1. 20. (법률 제7077호)
화물유통촉진법	1991. 12. 14. (법률 제4433호)	2002. 12. 30. (법률 제6841호)

IV. 결 론

헌법상 정보보호의 문제는 정보를 수집하고 소유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의 헌법적 보장 문제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이 체계적으로 제·개정되고 있어 정보보호문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개념의 통일된 정의, 정보의 재산적 가치의 인정, 정보와 관련된 개별 조문의 입법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새로 개정된 여러 헌법이론서를 보면 정보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2003년 4월17일에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2006)에서 지식정보사회 운영과 규율의 기본적인 법규범으로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 상법, 형법 등의 일반법 및 지식정보社会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절차법의 개정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정보社会의 물적 조건인 인프라 구축과 차별 없는 접근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 및 정보이용권·자기정보통제권·자기정보접근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기본권”的 헌법상 수용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정보보호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고작성과 교정에 있어서 많은 자료와 정보 제공은 물론 고견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 [1] 강경근, “헌법학”, 법문사, 1998.8.
- [2] 임종인외 공저, “Cyber Space의 법과 기술”, 북카페, 2003.1.
- [3] 혀영, “한국헌법학”, 박영사, 2003.2.
- [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3.3.
- [5] 권영수,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4.
- [6] 황남기, “헌법부속법령”, 찬글, 2003.6.
- [7] 김철수, “정보화와 기본권보호”, 정보화와 민주발전, 통신개발연구원, 1987.
- [8] 강경근,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 문제”, 통신정책동향, 통신개발연구원, 1988.12.
- [9] 김배원, “알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법학연구, 1990.12.
- [10] 박영도, “정보사회의 전개와 입법적 대응”, 연구 보고(92-01), 한국법제연구원, 1992.2.
- [11] 이상덕, “정보사회와 정보”, 통신정책연구, 통신개발연구원, 1992.3.
- [12] 이선화, 박기식, 이대기, “국내 정보통신관련 법규 분석”, 한국통신학회지, 1993.6
- [13] 권영호, “국민의 알권리”, 고시계, 1993.12.
- [14] 안병성, “정보화사회를 위한 정보보호대책에 관하여”,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지, 1994.4.
- [15] 신각철, “국가기밀과 정보의 처리, 전송 등 유통 문제”, 월간 정보화사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94.12.
- [16] 이선화, 박기식, 신범철, “우리나라 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지, 1995.6
- [17]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1997. 11.
- [18] 한상근, “키 복구정책 및 기술/헌법과 형사소송법”, WISC1998, ETRI, 1998.9.
- [19] 류시조, “사이버공간의 헌법상의 과제”, 비교연구총서, PUFS, 1999.12.
- [20] 주덕규, 박광진,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통신학회지, 2000.3.
- [21] 이대기, 조영섭, 윤이중, 조현숙,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규 분석”, 한국통신정보보호 학회지, 2000.12.
- [22] 정찬모, 은승표, 오병철, 정진영, 오승종, 오태원, “사이버스페이스 법제의 법이론적 특성과 체계정립”, 연구보고(01-2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12.
- [23] 정보통신부,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고시 제2002-23호)”, 2002.5.1.
- [24] 정보통신부, “중장기정보보호기본계획”, 2002.8.
- [25] 이대기, 조영섭, 진승현, 정교일,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규 분석”, 한국정보보호학회지, 2002.8.
- [26] 이대기, 노종혁, 김태성, 진승현, 정교일, “국내의 컴퓨터법과관련 차별법규 분석”, CISIC 2002, 한국정보보호학회, 2002.11.
- [27] 대한민국국회, 헌법지식DB
(<http://www.assembly.go.kr>)
- [28]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http://www.moleg.go.kr>)
- [29] 기타 관련기관 홈페이지 및 신문기사

〈著者紹介〉



진 승 헌(Seung-Hun Jin)

정회원

1993.2 : 숭실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
공학사
1995.2 : 숭실대학교 전자계산공학과
공학석사
2004.2 : 충남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이학박사
1994.12~1996.4 : 대우통신 종합연구소
1996.5~1999.5 :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1999.6~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 인
증기반연구팀장
관심분야 : I&AM, PKI, Network Security, EC



정 교 일(Kyo-il Chung)

종신회원

1981.2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공
학사
1983.2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공
학석사
1997.8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1981.12~현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
정보보호기반그룹장/책임연구원
관심분야 : IC Card, Security, Biometrics, 국가
기반보호, 신호처리



이 대 기(Dai-Ki Lee)

종신회원

1966.2 :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공
학사
1987.2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공
학석사
1966.2~1980.3 : 체신부 통신사무관
1980.4~1998.7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호기술연구부
장/책임연구원
1998.8~2003.12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기반
연구부 초빙연구원
1998.9~현재 : 프롭투정보통신(주) 컨설팅본부장
관심분야 : 정보보호(정보통신)법·제도·정책, 네트워
크보안, 정보시스템감리



유 형 준(Hyung-Jun Yoo)

정회원

1998.2 :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2000.2 : 한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1998.3~2000.2 : 한남대산업기술연구소 연구원
2000.2~현재 : 프롭투정보통신(주) 정보기술연구소 전
임연구원
관심분야 : 컴퓨터/네트워크보안, 정보보호시스템평가기
준, 취약점분석·평가



김 영 국(Young-Kook Kim)

정회원

1983.2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
학사
1987.2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
학석사
1983.2~1984.12 : 코리아타코마 주임연구원
1987.3~1998.6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호기술연구부
선임연구원
1998.9~현재 : 프롭투정보통신(주) 대표이사
관심분야 : 네트워크보안, 정보보안시스템, 정보보호컨
설팅